

제29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29조의 요약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인세법상 기부금 받은 경우 주는 법인의 손비인정 대상단체(영 §36①(1), 법령상 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만 적용됨.
-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는 이자소득금액⊕투자신탁의 이익⊕배당소득금액⊕복지용자 이자금액⊕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
(※ 대출이자가 아닌 단순한 금융기관 예치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준비금 적립 허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될 때까지 미사용 잔액은 5년 일 때, 일시익금산입하며, 해산·폐지·변경시도 익금산입함. 단, 사업을 포괄적으로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승계시 환입 제외함.
- 5년내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시 이자상당 가산액(미사용환입한 1일당 0.03%)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
- 고유목적사업 사용개념 : 고정자산 취득비용, 직접 인건비, 법령상의 기금, 의료법인의 의료기기취득지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 등과 중복적용 배제

●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당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제1항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개요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유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독지가들로부터 자금출연기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 돈의 금융자산 활용으로 이자소득이 생기는데, 이자소득을 비영리고유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당해 이자소득 등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세부담의 경감을 통한 목적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II. 손금산입가능법인 요건 (법 제29조제1항·제6항)

① 비영리내국법인 중 특정법인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내국법인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일부를 제외한 단체만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본 법상의 법정지정기부금에 지출사용할 수 있도록 세무상 배려를 하는 것이다.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본 법 제1조제2호는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법인, 기타 특별법상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설립목적 가진 법인과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기부금단체·공익단체·기금만 고유목적 적립금 손금가능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기부금손비인정 대상단체와 법령상 설치된

기금만이 해당된다.

규정 표현에서 본 법 제29조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라고 종전의 부정적 표현에서 긍정 표현으로 규정하였고, 다음의 시행령 제56조제1항은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긍정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다음 시행령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종전에는 부정의 부정으로 이중부정 표현방법을 개정하였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사 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2010. 12. 30 신설)

③ 고유목적사업비용 및 지정기부금 지출 예정

상기의 비영리법인이 법인고유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만 손금산입하는데,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법령이나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이라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밖에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도 가능한데 본 법 제24조제1항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에 부합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을 규정하고 있다. 즉,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을 사용하려는 경우도 손금산입 가능하다.

④ 준비금명세서 첨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여 세무조정 및 결산조정하기 위하여는 본 법 제60조의 일반법인의 과세표준신고와 본 법 제62조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맞추어 적법한 신고납부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관련된 준비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 항 규정의 원칙으로는 준비금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손금산입한다”라는 표현은 아니므로 사후 보정요구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손금산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준비금 자체를 결산상 손금산입처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⑨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Ⅲ. 준비금손금산입금액 범위 계산 (법 제29조제1항·제7항)

①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복지용자이자금액+수익사업소득의 50%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매사업연도마다의 금융기관 이자소득금액 전액, 배당소득금액 전액,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이자소득 전액, 특별법인이 복지사업관련 조합원 등 용자의 이자금액의 전체 금액과 여타의 수익사업 발생소득금액의 50%이다.

여기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은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분야 등에서 조달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 예치함으로 인한 금융소득이거나 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인데, 이는 이론적 관점으로 보면 고유목적사업상의 자금원천이므로 원래부터 과세제외될 항목이지만, 수익사업소득으로 열거된 것이다. 따라서 고유자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준비금설정방법으로 전액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금융보험 비영리법인도 이자소득은 전액 해당

그러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대출이자(사업소득)가 아닌 단순한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전액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수입은 일반사업수입으로 50%만 적용되며, 특별법이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기금조성이나 급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008. 2. 22 개정)

③ 수익사업 발생소득 계산방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금손금산입이 가능한데, 이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유자금이나 인력 및 설비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단, 준비금 설정전 총 소득에서 전액 설정가능한 이자소득 등을 빼고 이월결손금과 일정한도내 손금산입 가능기부금(국가 등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을 설정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10. 3. 22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융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분배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도 광의로 보아 배당소득의 범주에 속하므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소득으로 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 투자신탁의 편입된 자산비중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서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해야 한다.

단,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집합투자기

구로 본다.

관련법령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2010. 2. 18 개정)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2010. 2. 1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

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⑥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전액 해당

비영리법인의 최소한의 수익창출활동과 관련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증법상 제한을 위반한 주식(5% 초과 보유분)과 관련된 배당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建設利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⑦ 손금산입을 위한 결산반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관련 재무제표에 결산조정방식으로 준비금이 잉여금감액계정으로 계상 반영되어야 한다.

IV.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순차사용과 상계

(법 제29조제2항)

①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내 준비금을 수익사업아닌 사업, 즉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지출사용시 사용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하고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누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고 나서 그 금액으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즉, 당연도 초과 지출시라도 당연도 설정할 금액을 미리 뺀 것으로 보아 세무상 총액을 손금산입하고, 일부를 미리 사용한 실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②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와 기금·준비금 적립액의 사용간주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한 경우만 손금산입된 준비금에 문제가 없으며, 5년내 사용하지 못하면 5년째 익금환입된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상의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금액이 사용금액이며,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자·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자가 준비금을 법령규정상의 기금이나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며, 의료업 영위 비영리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시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및 농협·수협·신협 또는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이 상호금융 등 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❶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2. 12. 30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8. 2. 29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003. 12. 30 신설)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마목(관련 토지의 취득·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2011. 3. 31 신설)

③ 손비인정 의료기기 등의 범위

비영리의료업 영위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 등에 투자시에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건의료정보의 관

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설비 등이 해당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 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3. 31 개정)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2007. 3. 30 개정)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2007. 3. 30 신설)
- ② 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008. 3. 31 개정)

④ 건강보험·연금관리 등의 비영리특별법인

법령상의 기금·준비금적립이 사용금액으로 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둘째,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셋째,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는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한한다. 여기서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란 설립근거법이 민법이나 상법 등의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거 설립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법인을 말한다.

현재는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예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등을 들 수 있다.

⑤ 의료업 영위 비영리 법인의 의료기기 취득

의료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의료법법인의 경우 의료업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이자 수익사업에도 해당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⑩ 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8. 2. 29 개정)

⑥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무상 대여나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연합 또는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의 출연**

농협중앙회가 부실회원조합을 지원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어 농업중앙회가 회원조합에게 무이자 장기 자금대출하는 경우도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한다. 또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상호금융 등 각 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금액으로 본다.

⑦ **고유목적사업 사용 지정기부금 지출의 실질개념**

지급준비금 중 최초의 손금에 산입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미사용잔액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년째 익금환입하면서 세법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가산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본래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가 이자소득의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전환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지 않는 이자소득까지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지출이란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한 금액, 지출된 인건비, 경비 등을 말한다.

⑧ **실질적인 사용지출**

이는 당해 법인이 사업목적상 외부로 사용 지급 혹은 지출한 것을 의미한다. 즉, '지출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됨을 의미

한다.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의 전용이나 보전하여 구분경리하고 있는 상태는 지출이 아니며 적어도 법인의부로의 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보험법인 등은 관련 법 규정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강제적립한 것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V.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시익금산입 (법 제29조제4항)

① 미사용잔액의 익금산입 이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수입으로부터 축적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지정기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째에 익금산입된다.

이는 가능하면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이밖에도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 전부를 폐지하거나 법인격없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일반 개인으로 변경되면, 준비금 전입으로 세제상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어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발생연도에 일시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내야 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후 미사용 잔액의 익금환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한 후 미사용잔액을 5년까지 계속 이월시킬 수 있는데 그 전이라도 법인해산·고유목적사업의 전부 폐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일반 개인거주자로의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해당 사유 발생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③ 준비금 손금후 5년째까지 미사용잔액 일시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 가산

5년내까지 사용 못하면 사용 못한 미사용잔액을 익금산입하는데 미사용잔액의 일시 익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차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가산납부하도록 본 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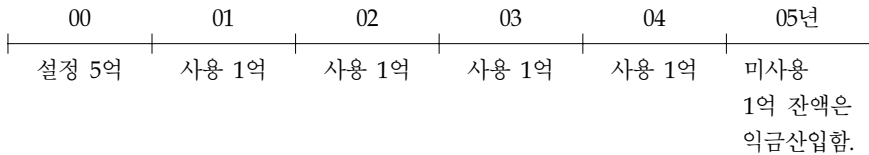
● **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및 미사용금액 잔액의 5년째 익금산입**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5년내에 전액 사용하면 익금산입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준비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간내의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이 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⑤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허용(법 제29조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당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양수한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즉,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출연하면서 해산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므로 출연받는 법인이 준비금을 승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사용잔액으로 환입되지 않는다.

VI. 5년내에 미사용잔액 익금산입시 이자가산

(법 제29조제5항)

① 이자상당가산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내 미사용 잔액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당해 사업연도에 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1일 0.03%	×	준비금 손금산입 연도 말일부터 환입연도 말 까지 날자 수
------------------------------------------	---	----------	---	---------------------------------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⑦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Ⅶ. 조특법상 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배제

(법 제29조제6항)

① 타법률에 의한 세액감면시 이중혜택 배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 감소의 혜택을 받은 것인데, 준비금 산입전에 조특법상의 비과세 면제 준비금 반영,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을 배제하여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⑧ 법 제2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